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재판 시 형의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 미 선†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지적장애인, 성폭력, 양형, 양형기준제도, 감경사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707).

† 교신저자: 이미선,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조교수, 경북 영주시 동양대로145 다산관 5205호
E-mail : msy23@dyu.ac.kr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치안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은 여전히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Fisher, Baird, Currey, & Hodapp, 2016). 특히 지적장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외부에 잘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Chave-Cox, 2014; Olley, & Cox, 2021).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은 범죄 발생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Olley, & Cox, 2021).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은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으며(Clare & Murphy, 2001; Sobsey & Doe, 1991; 이미선, 2020),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미선, 정주은, 2020).

양형은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확립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양형위원회,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양형 시 인용된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양형위원회, 2020). 법관은 사건의 범죄유형을 선택하고 양형인자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양형인자

는 가중 또는 감경인자로 구분되는데, 책임을 증가 또는 감경시키는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에 포함 된다. 이 중 강간 사건은 4유형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형량 범위는 6년에서 9년 사이이다. 감경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형량의 범위는 4년~7년, 반대로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형량의 범위는 8~12년이 된다.

양형기준을 고려한 법적 판단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으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양형기준의 준수 및 적용 방식은 법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노성호 등(1999)은 성폭력 사건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인자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반양형인자보다 특별양형인자가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다.

박성훈과 최이문(2016)은 양형기준 시행 전(2003-2004년)과 시행 후(2013-2014년) 양형 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형기준 실시 전 선고형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족관계’, ‘중한 상해’, ‘경미한 상해’, ‘심신 미약’이었다. 반면 양형기준 실시 이후, ‘친족 관계’, ‘중한 상해’, ‘경미한 상해’는 기존과 동일하였으나,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이 양형기준제도 실시 이후 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중한 상해가 존재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취약

한 상태의 경우 선고형량이 대략 20개월 정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이미션과 정주은(2020)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 시 인용된 감경사유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처벌불원’은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사유로 확인되었으며, ‘동종 전과 부재’, ‘진지한 반성’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외, 피고인의 ‘장애’, ‘연령’, ‘건강상태’, ‘가족부양(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유대’ 또는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었다. 일부 부적절한 감경사유 적용 사례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보호 또는 신뢰관계의 사람이 장애인을 성폭력 한 것은 명백하게 가중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려서부터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이 이루어지거나, 술에 취하여 또는 음란물 시청에 따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점이 감경사유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이미션, 정주은, 2020).

양형기준 범위에서 벗어난 양형도 존재하였다. 실제 2019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3.4%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양형 기준 내에 선고되었으나 일부 사건은 여전히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2020).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양형은 성범죄 양형 준수율과 비교하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유죄 선고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대략 1/3은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션, 정주은, 2020). 비록 기존 연구가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의 형량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존 연구 결과는 양형 기준과 실제 법관의 판단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형량 및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양형기준제도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현재 양형기준은 재판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 판결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형위원회 구성은 법관 및 법학 교수 등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양형의식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일반인과 사법전문가 간 양형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Roberts & Stalans, 1997; Hough, Roert, 1999; Indermaur, 1987), 강력한 유기 징역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법관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더 낮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leary, O’neil, Epperlein, Jpones & Gray, 1981; Rossi & Berk, 1995).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과 법관의 양형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일반인이 법관에 비해 더 엄격한 양형기준 및 유기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환, 2009; 박성훈, 김한균, 김영균, 박철현, 2014).

반면, 판단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양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엄격한 처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Mayhew &

Wan Dijk, 1997; Boers & Sessar, 1988),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다(Besserer, 2001). 연령과 양형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일부 연구는 연령이 어릴수록 더 엄격한 처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uhn, 1993; Kuhnrich & Kania, 2005),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관대하다는 결과 역시 존재하였다(Mayhew & Van Dijk, 1997). 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더 크지만(Madan, & Nalla, 2016; Settles, Buchanan, Yap, & Harrell, 2014; 김범준, 2007; 박성훈 등, 2014; 이창한, 2008), 형벌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sserer, 2001; Kuhnrich & Kania, 2005).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애인 대상 성범죄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력/위계를 사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한 자에 대해서 각각 1년 이상 징역 또는 1~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 5년 이상 징역, 강간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현행 법정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절 형량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인 성범죄 판단 시 사용되는 감경사유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이미선, 정주은, 2020). 본 연구에서 실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결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감경 사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확인한다.

셋째,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양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총 529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미성년자 7명을 제외한 522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만 19세부터 74세로 평균 연령은 39.6세(표준편차 = 13.63)이었다. 응답자 연령 분포는 20대 177명(33.52%), 30대 79명(14.96%), 40대 99명(19.0%), 50대 130명(24.9%), 60대 이상 36명(6.9%)이었다. 응답

표 1. 참가자 특성

		빈도 (%)	
연령	19~29세	178	(34.1)
	30~39세	79	(15.1)
	40~49세	99	(19.0)
	50~59세	130	(24.9)
	60세 이상	36	(6.9)
	총계	522	(100.0)
학력	고졸이하	87	(16.7)
	대학 재학 이상	329	(63.0)
	대학원 재학 이상	106	(20.3)
	총계	522	(100.0)
성별	남성	231	(44.3)
	여성	291	(55.7)
	총계	522	(100.0)

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 87명(16.7%), 대학교 재학 이상 329명(63.0%), 대학원 재학 이상 106명(20.3%)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231명(44.3%), 여성 291명(55.7%)이었다(표 1. 참고).

연구 절차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형량에 대한 인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기준에 따라 (1) 강간(7년 이상 징역), (2) 유사강간(5년 이상 징역), (3) 위력/위계 간음(3년 이상 징역 또는 2~5천만원 벌금), (4) 위력/위계 추행(1년 이상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 벌금) 사건에 대한 형량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형량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에서 평가였다.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시를 통해 죄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유사 강간의 경우 “지적장애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제시하였으며 이후 유사강간에 대한 설명으로 “피해자의 항문이나 구강에(성기 제외) 가해자의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해당 죄명의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얼마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형을 개월 단위로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설문지는 원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설문 종료 후 관련 설문 문항의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에 대한 인식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여부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사유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이미션, 정주은, 2020), 특별양형인자 8개, 일반양형인자 12개를 선별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문장 78개를 추출하였다. 이후 설문지 소요 시간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항 간 내용이 비슷하거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4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2. 참고). 감경 사유 문항은 판결문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감경사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적 사항으로 연령, 성별, 학력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통해 2020년 7월~8월 사이 한 달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을 온라인상에 배포하였다. 참가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안내 받았으며 설문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를 희망한 경우, 응답자들은 모든 질문에 응답을 해야 했다. 참여 중이라

표 2. 감경사유 설문 문항

감경 사유	문항
처벌 불원*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9.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
약한 유형력*	2.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 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 14.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심신 미약*	3.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1.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수*	4.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청각장애*	5.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이다.
동중 전과 부재*	6.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진지한 반성*	7.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 노력*	8.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17.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 장애	15.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8.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다.
피고인 연령	28.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32. 피고인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건강	19. 피고인은 뇌출혈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가족부양(생활고)	25. 폐지를 주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다. 36.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 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39. 피고인은 10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성적충동 (우발)	22. 음란 동영상을 보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6.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5.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우발)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우발적	30.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8. 피고인은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1.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	21.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34. 피고인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도하겠다고 하였다. 37.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선도와 보살핌을 통해서 재범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사실 인정	1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6.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7.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미수	3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4.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 중지하였다
불우한 성장과정	29.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42.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불우하게 성장하였다.
피해자 부양	20. 피고인이 사망한 전처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하였다. 33.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왔다. 40. 피해자의 부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 *은 특별양형인자를 의미함

도 응답자가 설문 참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에 종료 가능하였으며, 중도에 응답을 종료한 경우 해당 기록은 데이터에서 삭제되었다. 설문에 응답하는데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 과

죄명별 형량에 대한 적절성

죄명별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력/위력 간음 및 추행 죄명에 대한 현행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표 3. 참고). 현행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현재보다 더 가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별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비동의’ 또는 ‘매우 비동의’ 응답한 비율은 전체 18.5%이었으며, 보통 2.3%,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8.1%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강간의 형량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05명 중, ‘7년 미만’으로 답한 인원은 3명(2.9%)이었으며, 기타 3명(2.9%)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현재보다 더 가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유사강간의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보통 3.4% 동의 75.5%로 나타났다. 비동의 경우 5년 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12.%)이었으며, 5~10년 미만 19명(15.8%), 10~20년 미만 35명(29.2%), 20년 이상 24명(20.0%), 무기징역 28명(23.3%), 사형 7명(5.8%), 기타 4명(3.3%)이었다.

강제추행의 경우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20.7%, 동의하는 비율은 74.3%이었다. 현재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한 120명 중, 3년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는 2명(1.9%)이었으며,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현재 형량보다 더 가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벌금에 대하여서는 28명의 응답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벌금형을 없애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5명(53.6%)이었으며, 2천만 원 이하 3명(10.7%), 5천만 원 이상 10명(35.7%)로 나타났다.

표 3. 죄명에 따른 형량 범위의 적절성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강간(7년이상 징역)	54 (10.3)	43 (8.2)	12 (2.3)	90 (17.2)	323 (61.9)
유사강간(5년이상 징역)	63 (11.9)	47 (9.1)	18 (3.4)	106 (20.3)	228 (55.2)
강제추행(3년이상 징역, 2~5천만원 벌금)	58 (11.1)	50 (9.6)	26 (5.0)	126 (24.1)	262 (50.2)
위력/위계 간음(5년이상 징역)	50 (9.6)	47 (9.0)	16 (3.1)	116 (22.2)	293 (56.1)
위력/위계 추행(1년이상 징역, 1~3천만원이하 벌금)	60 (11.5)	69 (13.2)	24 (4.6)	112 (21.5)	257 (49.2)

위력/위계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사건 형량의 적절하다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은 순서대로 78.3%, 70.7%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8명 중, 1명(1.0%)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력/위계 추행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인 24.7%가 현행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량에 대하여 1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는 1명(0.8%)이었으며, 1~3년 미만 4명(3.1%), 3~5년 미만 24명(18.9%), 5년 이상 75명(59.1%), 무기징역 13명(10.2%), 사형 2명(1.6%)이었다.

감경사유에 대한 인식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감경사유에 대한 동의여부를 분석한 결과, 개별 감경사유에 대하여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소 62.5%에서 91.0%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감경사유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고인의 음주(91.0%), 성적인 충동(86.7%), 또는 우발적(86.4%)으로 사건 발생한 것이 감경사유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86.9%), 피고의 연령(85.4%) 및 건강상태(85.4%) 등 피고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감경사유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수(62.5%), 미수(66.3%), 피고인의 정신 장애(66.5%), 처벌불원(66.9%), 진지한 반성(69.5%)에 대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사유로 감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

지 않았다(표 4. 참고).

문항 별 동의여부는 부록1(특별감경사유)과 부록2(일반감경사유)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범행 후 반성, 피해를 회복 하려는 노력을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문항의 동의 비율은 41.2%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수하였다(34.5%)’,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37.0%)’,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43.5%)’,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33.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30.5%)’,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30.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91.0%)’,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89.3%)’, ‘음란 동영상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88.9%)’와 같이 범죄 발생 원인이 성적 충동 또는 우발적이라는 이유를 감경의 사유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 비동의 비율은 가장 높았다. 또한 ‘피고인이 74세 고령이다(90.4%)’, ‘폐지를 주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다(90.4%)’,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불우하게 성장하였다(87.6%)’와 같이 피고의 연령이나, 생활고 및 어린 시절 환경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 2 참고).

표 4. 감경 사유에 대한 인식

감경사유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특별양형인자	자수	196.0 (37.5)
	처벌불원	326.0 (62.5)
	약한 유형력	170.0 (32.6)
	청각장애	352.0 (67.4)
	심신미약	155.0 (29.7)
일반양형인자	미수	367.0 (70.3)
	피고인 지적장애	128.0 (24.5)
	진지한 반성	394.0 (75.5)
	피해회복노력	92.5 (17.8)
	피해사실인정	176.0 (33.7)
	피해자 부양	175.0 (33.5)
	동종전과부재	157.0 (30.5)
	사회적 유대	137.0 (26.2)
	생활고/가족부양	131.6 (25.2)
	피고인의 연령	390.4 (74.8)
	피고인의 건강	419.0 (80.4)
	우발적 사건발생	103.0 (19.6)
	성적충동으로 인한 우발적 사건발생	97.5 (18.6)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424.5 (81.4)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사건 발생	69.3 (13.3)
		452.7 (86.7)
		68.5 (13.1)
		453.5 (86.9)
		47.0 (9.0)
		475.0 (91.0)

주. 동의여부 빈도 및 비율은 응답자 522명이 감경사유 별 개별문항에 응답한 빈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임. 응답자가 개별 문항에 대해 ‘동의함’, ‘매우 동의함’,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동의’한 것으로, 해당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또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 ‘비동의’로 코딩함.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

성별, 연령, 학력과 감경사유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경사유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처벌불원($r = .198, p < .001$)’, ‘약한 유형력($r = .099, p < .005$)’을 감경사유로 양형에 고려하는 것을 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감경사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처벌불원을 제외한 모든 감경 사

유와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력의 높을 수록 처벌불원을 감경사유로 사용하는데 비동하였다($r = .107, p < .005$).

반면 연령과 대부분의 감경사유와는 관련이 있었다. 개별 감경사유를 확인한 결과, 특별영향인자 중, ‘처벌불원’, ‘약한 유형력’,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로는 ‘음주’, ‘미수’를 제외한 모든 감경사유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해당 사유를 양형인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동하는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표 5, 6 참고).

논 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양형 시 고려되는 감경 사유 및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법정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법정형의 상향이 아닌 법원의 과소처벌에 대한 우려(김한균, 2020)의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양형 범위 및 실제 선고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추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제도는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명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형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기광도, 2015). 관행에서 벗어난 양형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의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욱 과중한 형량을 요구하였으며, 범죄의 유형 및

표 5.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 (특별양형인자)

	1	2	3	4	5	6	7	8
1. 성별	1							
2. 연령	.191**	1						
3. 학력	.120**	.121**	1					
4. 처벌불원	.198**	.083	.107*	1				
5. 약한유형력	.099*	-.044	.045	.570**	1			
6. 심신미약	.062	-.034	.032	.518**	.768**	1		
7. 자수	.079	-.138**	-.014	.389**	.501**	.450**	1	
8. 청각장애	.027	-.140**	.025	.352**	.470**	.552**	.425**	1

주. 성별 남성=1, 여성2; 연령 1=20대, 2=30대, 3=40대, 5=50대 이상; 학력 고졸이하=1, 대학교 재학 이상=2, 대학원재학이상=3으로 코딩하였음. 개별 감경사유는 동의 =0, 비동의= 1로 코딩한 후 해당 감경사유 포함되는 문항에서 비동의의 합을 사용하였음

* 상관이 $p < .005$ 수준에서, ** 상관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표 6. 성별, 연령, 학령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 (일반양형인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성별	1																	
2. 연령	.191**	1																
3. 학력	.120**	.121**	1															
4. 동종전과부재	.010	-.194**	-.032	1														
5. 진지한 반성	.048	-.167**	.031	.679**	1													
6. 피해회복노력	.044	-.131**	.027	.626**	.603**	1												
7. 피고인장애	-.030	-.122**	-.079	.522**	.488**	.468**	1											
8. 피고인연령	-.005	-.201**	-.023	.656**	.557**	.630**	.478**	1										
9. 피고인간강	.032	-.153**	.050	.528**	.406**	.487**	.458**	.652**	1									
10. 가족부양	.020	-.150**	-.011	.626**	.512**	.568**	.484**	.779**	.646**	1								
11. 성적충동	.045	-.123**	.044	.634**	.563**	.580**	.464**	.762**	.565**	.729**	1							
12. 음주	.084	-.006	.040	.486**	.403**	.459**	.314**	.627**	.454**	.609**	.731**	1						
13. 우발적	.031	-.154**	-.021	.624**	.513**	.563**	.468**	.769**	.594**	.752**	.856**	.653**	1					
14. 사회적 유대	-.037	-.207**	-.026	.674**	.570**	.607**	.464**	.748**	.547**	.766**	.735**	.578**	.718**	1				
15. 피해사실 인정	.032	-.123**	.037	.692**	.696**	.675**	.513**	.676**	.534**	.658**	.675**	.499**	.639**	.703**	1			
16. 미수	.049	-.054	.012	.500**	.487**	.537**	.447**	.529**	.330**	.541**	.576**	.419**	.542**	.542**	.646**	1		
17. 불우한 성장과정	-.016	-.156**	-.007	.615**	.493**	.506**	.464**	.763**	.609**	.710**	.728**	.597**	.722**	.709**	.617**	.453**	1	
18. 피해자 부양	.033	-.164**	.008	.664**	.593**	.626**	.512**	.756**	.621**	.794**	.776**	.555**	.771**	.761**	.700**	.598**	.678**	1

주. 성별 남성=1, 여성=2; 연령 1=20대, 2=30대, 3=40대, 4=50대 이상; 학력 고졸이하=1, 대학교 재학 이상=2, 대학원재학이상=3으로 코딩하였음. 개별 감경사유는 동의 =0, 비동의=1로 코딩한 후 해당 감경사유 포함되는 문항에서 비동의 합을 사용하였음

* 상관이 $p < .005$ 수준에서, ** 상관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심각성과는 무관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요구하고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에 있어 국민들의 엄격한 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Roberts & Stalans, 1997; Hough, Robert, 1999). 양형의 목적은 범죄의 죄질, 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응당 피고인의 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처벌뿐만 아니라(법원조직법 제81조의6 1항),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로 복귀의 목적이 고려해야 한다(제82조의6 2항). 일반인들의 엄벌주의적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없으며, 양형의 목적에 따라 범죄 예방 및 교화를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 등 같은 일신상의 문제를 고려한 감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범행이 ‘음주’나, ‘성적충동’ 기인하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감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범행 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경사유로 사용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반성’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피해 평가 의견서는 피해자의 권리 제

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문가인 심리검사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견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된다(이정원, 2018). 최근 재판에서는 범죄피해평가 의견서를 근거로 양형인자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평가 의견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의 여부를 판단하거나(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노2853; 인천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고정2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8고단3592),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한 전력을 확인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한 사례도 존재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06.09. 선고 2017고합12). 또한 피고인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은 상태이며 여전히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20고합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선고 2017고단850). 피해자 의견진술을 반영한 양형은 사회복수관념 부활 및 중벌화를 초래하며, 피고인의 방어상의 권리 및 이익의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민영성, 2009). 피해자 진술청취가 피해자 양형 의견의 무조건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양형 인자를 판단하는 정보의 출처로 사용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 방식에 있어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거나, 온라인 설문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연구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점에서도 무선화된 표집으로 보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20대,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과다 표집되었다. 이러한 표집상의 문제는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법정형에 대한 인식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선고형 범위 및 죄명별 평균 선고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문항 구성 상 오류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감경사유에 대한 확인 방법에 있어서 한계이다. 실제 재판에서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양형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경사유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순히 판결문의 인용된 일부 문장만을 제시하여, 판결문에서 감경사유가 언급된 맥락이나 전체 사건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감경사유가 대부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반대로 어떠한 감경사유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면 다각적인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과 더불어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Chave-Cox, 201; Clare & Murphy, 2001; Fisher et al., 2016; Olley, & Cox, 2021). 특히 진술 이외 다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양형 기준 및 양형인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감경사유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가중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양형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처음으로 지적 장애인 성범죄 양형 시 실제 사용되는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검토하여 추후 합리적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형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친 재량에 기인한 양형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양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회복적 정의 실현 및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이라는 양형 기준제도의 목적이 무색하게 국민들의 양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실제 국민들의 양형에 참여한 경험은 추후 양형에 대한 적절성 및 신뢰성을 향상되는 것을 고려할 때(이진국, 2019), 양형에 대한 참여 기회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은 국민들의 양형 및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기광도. (2015).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한국범죄학, 9(1), 63-91.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협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 김한균. (2020).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형사정책, 32(2), 7-39.
-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 (1999).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영성. (200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강화. 법학연구, 49(2), 189-216.
- 박성훈, 김한균, 김영규, & 박철현.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VIII):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70.
- 박성훈, & 최이문. (2016).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155-188.
- 양형위원회, 2019. 연간보고서.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2020 양형기준
- 이미선. (2020).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법, 11(2), 211-239.
- 이미선, & 정주은. (2020).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감경사유: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3), 67-94.
- 이정원. (2018).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 전국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3), 5-41.
- 이진국. (2019).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397-418.
- 이창한. (2009).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1), 273-300.
- Besserer, S. (2001) 'Attitudes Towards Sentencing in Nine Industrialized Countries'in Paul Nieuwbeerta (ed.) Crime Victim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Hague: Boom Juridische uitgevers, 391-409.
- Boers, K., & Sessar, K. (1991). Do people really want punis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restitution, needs for punishment, and fear of crime. In Developments in crime and crime control research (pp. 126-149). Springer, New York, NY.
- Chave-Cox, R. S. (2014). Forensic examin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sexual abuse complainant.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25, 71-75.
- Clare, I. & Murphy, G. (2001). Witnesses with learning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9(3), 79-80.
- Fisher, M. H., Baird, J. V., Currey, A. D., & Hodapp, R. M. (2016). Victimization and social vulner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review of research extending beyond Wilson and Brewer. Australian Psychologist, 51(2), 114-127.
- Hamilton, V. L., & Rytina, S. (1980). Social consensus on norms of justice: Should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5), 1117-1144.
- Hough, M., & Roberts, J. V. (1999). Sentencing trends in Britain: Public knowledge and public opinion. Punishment & Society, 1(1), 11-26.

- Indermaur, D. (1987). Public perception of sentencing in Perth, Western Australia.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20(3), 163-183.
- Kuhn, D. (1993). Science as argument: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tific thinking. *Science education*.
- Kühnrich, B., & Kania, H. (2005). Attitudes towards punishment in the European Union: Results from the 2005 European Crime Survey (ECSS) with focus o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 Madan, M., & Nalla, M. K. (2016). Sexual harassment in public space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seriousness and victimizati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6(2), 80-97.
- Mayhew, P., & Van Dijk, J. J. (1997). Criminal victimisation in eleven industrialised countries.
- McCLEARY, R., O'NEIL, M. J., EPPERLEIN, T. F., JONES, C., & Ronald, H. GRAY (1981) "Effects of Legal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on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28. *Social Problems*, 276.
- Olley, J. G., & Cox, A. W. (2021).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Roberts, J. V., & Stalans, L. J. (2004). Restorative sentencing: Exploring the views of the public. *Social Justice Research*, 17(3), 315-334.
- Settles, I. H., Buchanan, N. T., Yap, S. C., & Harrell, Z. A. (2014). Sex differences in outcomes and harasser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frightening sexual harassment appraisal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9(2), 133.
- Sobsey, D., & Doe, T. (1991). Patterns of sexual abuse and assault. *Sexuality and Disability*, 9(3), 243-259.
- 1 차원고접수 : 2021. 10. 04.
심사통과접수 : 2021. 10. 29.
최종원고접수 : 2021. 11. 24.

Public perceptions of the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for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isun Yi

Dong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ublic perceptions of the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for defendants convicted of sex crimes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522 adults in South Korea. Respondent endorsement of 20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which were embedded within the respective rulings, and the perceived appropriateness of statutory sentence for the crimes committed were assessed.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respondents endorsed the sentence; moreover, those who disagreed underscored the need for more severe punishment. Almost all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following reasons and explanations unfavorably: impulsiveness caused by sexual arousal or alcohol consumption; an accidental occurr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efendant age, health condition, socioeconomic status, developmental history, and family background. However, there was a relative agreement in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incident was relatively minor, or the defendant's reflection and attitude to recover the damage were used as reasons for the reduction. Differences in respondent perceptions of the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as a function of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were relatively small. However, younger respondents held harsher attitudes toward sentence reduction. The present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be mindful of victims' state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ile sentencing.

Key words :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exual violence, sentencing, the reasons underlying sentence reduction, perception of public

부록 1. 감경 사유(특별감경사항) 문항 별 빈도분석표

감경 사유	문항	M (SD)	동의여부 n(%)				
			1	2	3	4	5
처벌 불원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1 (1.06)	177 (33.9)	198 (36.8)	91 (17.4)	48 (9.2)	14 (2.7)
	9.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	2.22 (1.02)	150 (28.7)	179 (34.3)	131 (25.1)	54 (10.3)	8 (1.5)
약한 유형력	2.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2.1 (1.06)	179 (34.3)	187 (35.8)	94 (18.0)	49 (9.4)	13 (2.5)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 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	1.99 (.94)	182 (34.9)	205 (39.3)	96 (18.4)	34 (6.5)	5 (1.0)
	14.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17 (.998)	150 (28.7)	198 (37.9)	117 (22.4)	49 (9.4)	8 (1.5)
심신 미약	3.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79 (.92)	248 (46.6)	185 (35.4)	64 (12.3)	22 (4.2)	8 (1.5)
	11.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77 (.91)	251 (48.1)	175 (33.5)	68 (13.0)	22 (4.2)	6 (1.1)
자수	4.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2.26 (1.05)	145 (27.8)	181 (34.7)	120 (23.0)	67 (12.8)	9 (1.7)
청각/ 언어 장애	5.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이다.	1.93 (.96)	207 (39.7)	187 (35.8)	91 (17.4)	30 (5.7)	7 (1.3)
동종 전과 부재	6.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1.80 (.96)	255 (48.9)	159 (30.5)	73 (14.0)	29 (5.6)	6 (1.1)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1.73 (.89)	257 (49.2)	178 (34.1)	62 (11.9)	19 (3.6)	6 (1.1)
진지한 반성	7.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3 (1.01)	197 (37.7)	166 (31.8)	112 (21.5)	40 (7.7)	7 (1.3)
피해 회복 노력	8.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1.92 (.96)	213 (40.8)	180 (34.5)	97 (18.6)	23 (4.4)	3 (1.7)
	17.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1.98 (1.08)	228 (43.7)	149 (28.5)	90 (17.2)	40 (7.7)	15 (2.9)

부록 2. 감경 사유(일반 감경사항) 문항 별 빈도분석표

감경 사유	문항	M (SD)	동의여부 n(%)				
			1	2	3	4	5
피고인 장애	15.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2.12 (.98)	166 (31.8)	181 (34.7)	125 (23.9)	47 (9.0)	3 (.6)
	18.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다.	1.57 (.78)	297 (56.9)	175 (33.5)	32 (6.1)	15 (2.9)	3 (0.6)
피고인 연령	28.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1.62 (.84)	295 (56.5)	157 (30.1)	51 (9.8)	14 (2.7)	5 (1.0)
	32. 피고인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1.79 (.95)	256 (49.0)	158 (30.3)	74 (14.2)	29 (5.6)	5 (1.0)
피고인 건강	19. 피고인은 뇌출혈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1.70 (.84)	260 (49.8)	186 (35.6)	54 (10.3)	19 (3.6)	3 (0.6)
	25. 폐지를 주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다.	1.59 (.77)	285 (54.6)	187 (35.8)	35 (6.7)	11 (2.1)	4 (0.8)
생활고/ 가족부양	36.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 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1.77 (.92)	249 (47.7)	180 (34.5)	64 (12.3)	21 (4.0)	8 (1.5)
	39. 피고인은 10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1.82 (.95)	245 (46.9)	167 (32.0)	79 (15.1)	22 (4.2)	9 (1.7)
성적 충동	22. 음란 동영상을 보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59 (.84)	302 (57.9)	162 (31.0)	37 (7.1)	14 (2.7)	7 (1.3)
	26.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71 (.85)	256 (49.0)	190 (36.4)	57 (10.9)	12 (2.3)	7 (1.3)
	35.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1.68 (.88)	271 (51.9)	177 (33.9)	47 (9.0)	21 (4.0)	6 (1.1)
우발적	30.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1 (.86)	264 (50.6)	174 (33.3)	62 (11.9)	18 (3.4)	4 (0.8)
	38. 피고인은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왔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2 (.85)	250 (47.9)	199 (38.1)	49 (9.4)	20 (3.8)	4 (0.8)
	41.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60 (.78)	286 (54.8)	180 (34.5)	40 (7.7)	13 (2.5)	3 (0.6)

부록 2. 감경 사유(일반 감경사항) 문항 별 빈도분석표

(계속)

감경 사유	문항	M (SD)	동의여부 n(%)				
			1	2	3	4	5
사회적 유대	21.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1.72 (.85)	259 (49.6)	174 (33.3)	71 (13.6)	15 (2.9)	3 (0.6)
	34. 피고인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피고인이 다 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도하겠다고 하였 다.	1.70 (.92)	279 (53.4)	156 (29.9)	59 (11.3)	21 (4.0)	7 (1.3)
	37.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선도와 보살핌을 통해 서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1.81 (.94)	245 (46.9)	171 (32.8)	78 (14.9)	19 (3.6)	9 (1.7)
피해 사실 인정	1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 (1.01)	191 (36.6)	187 (35.8)	99 (19.0)	32 (6.1)	13 (2.5)
	16.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 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 하고 있다.	1.77 (.90)	249 (47.7)	180 (34.5)	64 (12.3)	24 (4.6)	5 (1.0)
	27.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2.05 (1.07)	203 (38.9)	161 (30.8)	98 (18.8)	49 (9.4)	11 (2.1)
미수	3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지하여 미 수에 그쳤다.	2.27 (1.10)	163 (31.2)	144 (27.6)	133 (25.5)	74 (14.2)	8 (1.5)
	24.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 고 스스로 중지하였다	1.95 (1.01)	219 (42.0)	166 (31.8)	90 (17.2)	39 (7.5)	8 (1.5)
음주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 인다.	1.50 (.81)	332 (63.6)	143 (27.4)	27 (5.2)	14 (2.7)	6 (1.1)
불우한 성장 과정	29.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우 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1.67 (.83)	266 (51.0)	184 (35.2)	53 (10.2)	15 (2.9)	4 (0.8)
	42.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불우하게 성장하였다.	1.64 (.83)	277 (53.1)	180 (34.5)	44 (8.4)	17 (3.3)	4 (0.8)
피해자 부양	20. 피고인이 사망한 전처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 하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하였다.	1.90 (.96)	219 (42.0)	182 (34.9)	87 (16.7)	25 (4.8)	9 (1.7)
	33.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 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왔다.	1.84 (.95)	232 (44.4)	183 (35.1)	69 (13.2)	33 (6.3)	5 (1.0)
	40. 피해자의 부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다.	1.72 (.89)	262 (50.2)	179 (34.3)	55 (10.5)	19 (3.6)	7 (1.3)